

# 대전광역시 3.8민주의거 기념조례안

의 안 번 호	536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9. 8. 28  
발 의 자 : 오정섭의원외 5인

## 1. 제안이유

4.19혁명의 단초가 된 1960년 3월 대전지역의 민주의거를 대전시민이 기념함으로써 숭고한 민주화 운동 정신을 시민정신으로 승화시키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계승발전 시키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1960년 3월 대전지역에서 자유당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학생 의거를 3.8민주의거로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매년 3월 8일을 3.8민주의거 기념일로 정함(안 제3조).
- 다.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대구광역시 2·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」, 「경상 남도 3.15의거기념일 지정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추후 예산확보
- 다. 관련부서 협의 : 자치행정과 협의

##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### **대전광역시 3.8민주의거 기념조례안**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3.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·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3.8민주의거”란 4.19혁명의 단초가 되는 1960년 3월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대전지역의 학생의거를 말한다.

제3조(기념일) 3.8민주의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3월 8일을 “3.8민주의거 기념일”로 정한다.

제4조(기념식 및 행사) 대전광역시장은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.

제5조(위탁) ① 대전광역시장은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무를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위탁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# 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대전광역시 3.8민주의거 기념조례안

## 찬성의원서명

의원명	서명	비고
오정미		
양수연		
이기숙		
송재용		
방희진		
윤영세		

대전광역시 3.8민주의거 기념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2009년 9월 3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9년 8월 28일 오정섭 의원외 5인
2. 회부일자 : 2009년 8월 28일
3. 상정일자 :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(임시회)  
제2차 행정자치위원회(2009. 9. 3)  
상정, 심사, 원안가결

## II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오정섭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4.19혁명의 단초가 된 3월 8일 민주의거를 대전 시민이 기념하는 날로 지정하여 숭고한 민주화 운동 정신을 시민정신으로 승화시키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1960년 3월 대전지역에서 자유당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학생의거를 3.8민주의거로 정의함(안 제2조).

- 나. 매년 3월 8일을 3.8민주의거 기념일로 정함(안 제3조).
- 다.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비영리민간단체 위탁하고,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.

### III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임묵)

#### ○ 본 조례 안은

1960년 3월 자유당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승고한 우리 지역의 민주의거 정신을 대전시민정신으로 승화시키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본문 5조와 부칙으로 축조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, 제2조에서는 3.8민주의거의 정의를,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3월 8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, 제5조에서는 기념식 등을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#### ○ 본 조례 안 검토결과

안 제2조 정의에서 3.8민주의거의 시간적·공간적 범위를 4.19혁명과 구분하고 있고, 대전지역의 학생의거로 명시하고 있어 조례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으며, 기념식 및 기념행사에 필요한 지원과 관련 주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의가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함.

**IV. 토론요지** : 생략

**V. 질의답변요지** : 생략

**VI. 심사결과** : 원안가결

**VII. 기타 필요한 사항** : 없음